

공정거래 업무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㈜우성정공, ㈜우성메텍과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한다.

제2장 임직원의 의무

제3조(자율준수 원칙)

-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업무 관련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4조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

- 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거래처 또는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**거래를 거절하거나**,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.
- ②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회사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, **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행위를** 아니한다.
- ③ **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**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**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** 하지 아니한다.
- ④ **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**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**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,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** 기술의 부당이용이나 거래처 이전 방해 등으로 **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간섭 또는 방해하지** 아니한다.

제3장 기 타

제18조(유효성 평가) 이 규정은 1년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.

<부 칙>

- ① 이 지침은 2025.03.17 부터 시행한다.